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dopted by decision No. 28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January 31, 1993, amended by Decree No.484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February 26, 1999; amended by Decree No.3400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November 7, 2002.

http://nk.chosun.com/economy/economy.html?ACT=EcoLawDetail&law_id=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3 년 1 월 31 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8 호로 채택

1999 년 2 월 2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 호로 수정보충

2002 년 11 월 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400 호로 수정

제 1 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3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다.

제 6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 7 조 외국투자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제 8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 9 조 중앙무역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한다.

제 10 조 해당 중앙기관은 라선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

제 11 조 라선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5. 토지, 건물 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 13 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 일, 외국인기업은 80 일 안에 해당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

제 14 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 15 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수 있다.

제 16 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 대표와 외국투자자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 17 조 모든 상품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대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 18 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거나 중계수송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밑에 지대에 단독 또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합영, 합작 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없이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 수 없다.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 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선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 22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중요 원료, 자재와 필요한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 24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 25 조 국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 26 조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외국투자자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 27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 26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 28 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 29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 검사문건과 상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 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 30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 31 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3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 33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3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 35 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 36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37 조 경영기간이 10 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 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 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 천만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 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 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 38 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그 임대료를 낮추어줄 수 있다.

제 39 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 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 41 조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직접 들어올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체류, 거주할수 있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 42 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 3 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44, pp.283 ~ 290.